

수원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나6521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나65210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4. 21 선고 2018가단6446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광화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종대

피고, 항소인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정 담당변호사 조상원

변론 종결 2021. 9. 15.

판결 선고 2021. 11. 3.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4. 21. 선고 2018가단6446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2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와 피고 사이에 2018. 4. 4. 체결된 매매계약을 180,467,21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80,467,2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확정·분리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1의 다.항 및 [인정근거] 부분(제4쪽 제8행 이하)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제6쪽 제1행의 'D에'를 'D에 대한'으로 고친다.

『다. D에 대한 적극 및 소극재산 등 재산 상태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제외한 D의 적극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평택시 E아파트 F호	140,000,000	매매가액
2	평택시 G건물 H호	25,000,000	매매가액
3	이 사건 제2 내지 9 각 부동산	1,280,802,000	감정평가액

1	평택시 E아파트 F호	140,000,000	매매가액
4	안성시 Y 전 5,082㎡	613,840,000	감정평가액
적극재산 합계		2,059,642,000	

1	2016. 8. 24.	I 은행	대출원리금	71,250,006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G건물 H호 부동산)
2	2017. 2. 28.	J	물품대금	72,890,698	
3	2017. 7. 26.	원고	투자금 등	156,000,000	지급명령 금액
4	2017. 9. 8.	K	대출원리금	805,290,520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제2 내지 9각 부동산)
5	2017. 9. 12.	L	대여금	200,000,000	"
6	2017. 10. 23.	M은행	대출원리금	49,000,000	
7	2018. 2. 이전	N	물품대금	28,590,000	가압류 청구금액
8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원리금	12,542,441	
9	"	평택세무서	국세	45,670,180	
10	"	송탄출장소	재산세	45,170	
11	"	한국전기공사	전기료	17,040,970	
12	"	O	가스탱크 대금	23,000,000	
13	2017. 7. 10.	O	대여금	251,057,534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Y 부동산)
14	2015. 4. 24. 2017. 9. 13.	K	대여금, 환어음 대지급금등	227,185,515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금액
15	2015. 4. 24.	Z단체	사전구상금	233,110,040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금액
16	2017. 6. 1.	AA	약정금	151,046,268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금액
17	2010. 3. 16. 2017. 10. 23.	M은행 (양수인 AB사)	대출원리금	353,472,666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Y 부동산)

소극재산 합계	2,697,192,008
---------	---------------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2 내지 9 각 부동산을 제외한 D의 적극재산은 위 표 중 순번 4

기재 부동산 뿐이었고, 소극재산은 위 표 중 순번 2 내지 12와 같았다[D는 B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8. 2. 20. '평택시 E아파트 F호'(표 중 적극재산 순번 1)를 P에게, 2018. 3. 9. '평택시 G건물 H호'(표 중 적극재산 순번 2)를 Q에게 각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10호증의 1, 13호증, 을 제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중 가지번호 표시 없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평택시청(송탄파출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R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평택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K, I은행, M은행, IBK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S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의 나.(1)항(제6쪽 제4행 이하)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사해행위 및 피고들의 악의 추정

D가 2018. 2. 6. B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D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되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2018. 4. 4.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내지 9 각 부동산을 매도함에 따라 당시 D에 남아 있던 위 표 '적극재산' 란 순번 4번 기재 부동산의 가액 613,840,000원에 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위 표 '소극재산'란 순번 13 내지 17 기재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만 해도 합계 1,215,872,023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함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D가 B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와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내지 9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D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들인 피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의 나.(2)항 네 번째 문단(제7쪽 제15행 이하)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오히려 갑 제12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T조합, U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2018. 4. 19. D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합계 203,000,000원이 같은 날 피고의 형 V 명의의 K 계좌로, V 명의의 K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W조합 계좌로 차례로 이체되어, 결국 피고에게 다시 반환되었다.

② 피고는 이에 대하여, 처음에는 D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직·간접적으로 환급받거나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어, 은행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대출 예정인 1,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8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서류 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는 잔고증명 등 추가 증빙이 있어야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수 있고, 건고추와 같은 물건으로 매도인 D가 아닌 D의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형태의 추가 증빙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어, 개업자금으로 쓰려 했던 203,000,000원을 우선 D에게 입금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를 만들어 대출요건을 충족한 다음, 형 V에게 부탁하여 V로 하여금 D를 위하여 D의 채권자들인 L, AC에게 건고추로 D의 채무를 대물변제하게 하였고, 이에 D는 다시 V에게 고추대금조로 20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V는 위 돈을 다시 피고에게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D가 V에게 다시 고추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자기 대신 매매대금을 지급해줬던 V에게 건고추 대금 상당액을 보전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V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다시 반환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피고는 또한 당심에 이르러, 당장 V의 수중에 있던 70,000,000원을 빌려 이를 D에게 입금하고, 이를 D → V → 피고 순으로 다시 돌려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64,000,000원 및 69,000,000원을 위 순서대로 순차 입금 및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고가 D에게 매매대금 합계 203,000,000원(= 70,000,000원 + 64,000,000원 + 69,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추가 증빙 자료를 만들어 대출요건을 충족하였으며, D를 위하여 D의 채권자 L에게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100,000,000원을 대위지급하고, D의 채권자 AC에게 1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L, AC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피고와 V 및 D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염기창

판사이지형

판사최호열

별지